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의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관련법령
  -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주요사업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
-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  
화를 위한 방송사업
-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다. 출연의 필요성

-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라. 기관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에스플렉스센터)
- 규모 : 22,155㎡(약 6,714평)

○ 전경 및 위치도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장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현황

-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2020년 2월 설립되었음.
- 현재 2실 5본부 29팀에 354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2022년 9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tbs FM, tbs TV, tbs eFM 등 3개의 방송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음.

### < TBS 인력 현황 >

□ 정원 398명 / 현원 354명 ('22. 9. 1. 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관리운영직
정원	398	1	28	52	53	76	179	9
현원	354	1	22	48	53	50	174	6
과부족	△44	0	△6	△4	0	△26	△5	△3

※ 서울시 파견공무원(2명), 기간제 직원(22명) 제외

#### 다. 출연의 규모 및 필요성

- 2023년도 TBS의 출연금 규모는 232억 1천 7백만원으로 2022년도 320억원 대비 27.4% 감액되었음.

### < TBS 출연금 연도별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안)
출연금	34,762,547	37,517,981	32,000,000	23,217,308

※ 재단설립일 2020.2.17.

- 당초 TBS가 2023년도 출연 동의를 위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 규모는 411억 8천 3백만원이었으나 서울시는 232억 1천 7백만원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였음.
- 이는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을 1:1로 편성한 것으로, 공영 방송인 KBS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임.

## < 2023년도 TBS 출연금 규모(안) >

(단위 : 천원)

구분	TBS 제출(안)	서울시 제출(안)
계	48,112,557	46,434,616
출연금	41,182,557	23,217,308
자체수입	6,930,000	23,217,308

-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허가사항은 그 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TBS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수행해야 함.<sup>1)</sup>
- 또한 2022.11.15.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서도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시행일 전까지는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 2.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3.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4.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6. 재단의 사업 자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